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([ ]재부과 [ ]정산부과 [ ]환급 [ ]반환) 통지

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8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·제28조제3항·제30조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·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([ ]재부과 [ ]정산부과 [ ]환급 [ ]반환)함을 알려드립니다.

계	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	가산금	미 수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	[ ]재부과 [ ]정산부과 [ ]환 급 [ ]반 환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	[ ]재 부과 [ ]정 산부과 [ ]환 급 [ ]반 환 결정일자	[ ]수 납 [ ]정 산부과 [ ]환 급 [ ]반 환 은행 및 계좌번호
(재부과·정산부과·환급 또는 반환) 사유						
납부통지서 발행번호						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

팩스번호( 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